1. 개정이유

약국 등이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로서 군부대, 지방 중소공항 등을 특수장소로 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격오지 군부대에서 전문의약품을 취급(수여)할 수 있는 대리인자격을 의무병과 군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면허자 군무원으로 확대

나. 군의관이 미배치된 부대로서 인근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수여) 허용

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수여)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군부대

가. 도서·벽지·접적지역에 위치한 격오지 군부대(이하 “격오지 군부대”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로서 해당 부대의 주출입구로부터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

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터미널로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시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

2) 해당 군부대의 군무원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조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소속 또는 지원 군부대의 장이 취급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람

제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자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과 같으며”를 “다음 각 호에 의하되”로, “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을 “제11호, 제12호나목,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소에서의 취급의약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진통제, 진해제”를 “진토제, 진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12호에”를 “제2조제12호가목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10호 및 제11호의”를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격오지”를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급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해당 취급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취급의약품을 판매·공급해서는 아

니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격오지”를 각각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해당 격오지”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격오지”를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수장소의 지정 등)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특수장소의 지정 등)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군부대 가. 도서·벽지·접적지역에 위치한 격오지 군부대(이하 “격오지 군부대”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로서 해당 부대의 주 출입구로부터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터미널로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시설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14. (생 략)	
제4조(대리인의 자격) 제3조에 의해 지정받은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취급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의 자격)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	9. ---------- 의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 2) 해당 군부대의 군무원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
<신 설>	

	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나. 제2조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소속 또는 지원 군부대의 장이 취급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자
제5조(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5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이 경우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한다.	제5조(취급의약품) ----------------------------- 다음 각호에 의하되, -------- 제11호, 제12호나목,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소에서의 취급의약품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중 일반의약품에	2. ---------------------- 진토제, 진해제----------- ------------------------

한하되, 당해 취급자가 정하여 공급하는 품목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2호에 따른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6. 제2조제12호가목에 ---
제6조(취급자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취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에 의하여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해당회사(제2조 제5호 및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해당 회사 대표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당해회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약	1. ----------------------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

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준수사항) ①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준수사항) ① ----------. ---- 제2조제12호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급자는 취급의약품을 판매공급함에 있어 실제 판매가격의 15퍼센트를 할인하는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취급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해당 취급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취급의약품을 판매·공급해서는 아니된다.
3.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및 격오지 군부대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2조제12호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2호에 따른 ----------.
1.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해당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취급자는 의약품의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격오지 군부대의 기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 해당 ----------.
제9조(사후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장소 운영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수장소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할 경우 시장·군구·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 ---- 제2조제12호에 따른 ----------.